



제42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공지능기술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의 특례〉

■ 민병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858호)

2025. 4.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명 호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입법 필요성 및 주요 내용	3
가. 개정안 발의 배경	3
나. 법 개정 필요성 검토	5
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등	9
2.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	13
가. 절 제목	15
나. 특례의 내용 및 특례의 실제적 적용 요건	15
다. 특례의 절차적 적용 요건: 사전 심의	19
라. 위험요인 평가 및 제출	22
마. 정보 공개	24
3. 관리·감독 등	27
가. 관리·감독 체계	28
나. 특례의 제한	3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민병덕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2025. 1. 31.
3. 회 부 일: 2025. 2.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학습데이터를 확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처리 방식의 변화, 사회적 요구 등을 유연하게 포섭할 수 있어야 함.

특히, 인공지능(AI) 기술 개발 및 성능 개선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 확보, 범죄예방 등 공익적 필요가 높은 분야,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이 시급한 분야 등에서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활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기술과 데이터 처리 과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개인정보 처리 과정의 투명성 강화에 대한 요청도 증가하고 있어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등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정보 처리가 발생하는 영역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의 위험요인 평

가, 개인정보 처리 현황의 투명한 공개 등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하거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강화된 안전조치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방안 등을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때에는 인공지능(AI) 등 기술 개발 및 성능 개선을 위해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처리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위험요인 등을 평가하도록 하며, 사후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주기적으로 이행 점검 등 엄격한 관리·감독하도록 하여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12 및 제28조의13).

Ⅲ. 검토의견

1. 입법 필요성 및 주요 내용

가. 개정안 발의 배경

-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기술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하는 인공지능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함¹⁾.
- 이러한 인공지능기술은 경제 성장과 산업 혁신을 주도하여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도시, 교통, 복지, 의료, 에너지, 환경 등의 영역에서 사회적 현안을 해결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 인공지능기술 개발은 국가와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연적인 과제가 됨. 이에 따라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인공지능 기술 선점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는 한편으로, 이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정책적 전략을 마련하고 있음.

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시스템”이란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과 적응성을 가지고 주어진 목표를 위하여 실제 및 가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추천, 결정 등의 결과물을 추론하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말한다.
3.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이하 생략)

- 미국은 AI 데이터센터에 약 730조원, 중국은 향후 6년간 2,000조원, 유럽연합은 AI 기가 팩토리 사업에 약 300조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²⁾.

□ 이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도 인공지능기술 개발 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으로,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³⁾을 마련하고,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을 제정(2025. 1. 21.)하였음.

○ 이러한 노력 등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수준은 지속적으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선두 국가로 분류되는 미국이나 중국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평가 매체에 따라서 미국, 중국에 이어 3위권 그룹을 형성⁴⁾하거나, ‘AI 선도국가’(미국, 중국,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에 이어 일본, 프랑스, 독일, 스페인, 대만 등과 함께 ‘AI 안정적 경쟁국가’로 분류⁵⁾되었음.

2) 관계부처 합동, 「AI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 AI역량 강화 방안」, 2025. 2. 20.

3) 관계부처 합동, 「AI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 AI역량 강화 방안」, 2025. 2. 20., 관계부처 합동 「AI 데이터 확충 및 개방 확대방안」, 2025. 2. 20. 등

4) 영국 토터스미디어(Tortoise Media), ‘글로벌 AI 지수(Global AI Index)’, 2024. 9.

7개 영역(AI인재, 인프라, 운영 환경, 연구, 개발, 전부 전략, 생태계)을 평가한 순위로, 미국 100점과 중국 54점에 비해 한국은 27점으로 점수 격차가 큼

5) 보스턴컨설팅그룹, ‘AI 성숙도 매트릭스’ 보고서, 2024. 12.

73개국의 인공지능 도입 현황을 평가하고 해당국의 인공지능 기술에 기반한 경제 발전 잠재력을 분석함.

나. 법 개정 필요성 검토

□ 개정안은 현행 법령과 제도로는 인공지능기술 개발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사회적 난제 해결과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인공지능기술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의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하에서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하에서 인공지능기술 개발의 현황을 통해 법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함.

□ 일반적으로, 인공지능기술 개발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쟁점은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적법 요건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잘 작동할 수 있는지 여부임⁶⁾.

○ 먼저,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로서 ‘개인정보의 수집’ 측면을 살펴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인공지능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에 따라 ‘동의’나 ‘계약 체결’ 등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함.

- 그러나 인터넷 등에 공개된 정보를 대규모로 스크래핑(Scraping)⁷⁾하여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를 확보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 현행법상의 정보주체 개별 동의나 계약 체결 등의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⁸⁾.

6) 전웅준, Chat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이 제기하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쟁점, 규제법제 리뷰 제 23-3호, 한국법제연구원, 2023. 6. 30.

7) 웹사이트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법

8) 보호위원회 보도자료,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에 이용되는 ‘공개 데이터’ 처리 기준 제시, 2024. 7. 17. 전웅준, 한국법제연구원, Chat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이 제기하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쟁점, 규제법제 리뷰, 2023. 6. 30.

- 이와 관련하여서는, 판례⁹⁾와 법령의 해석¹⁰⁾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자가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개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다음으로,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등 처리’ 측면을 살펴보면, 당초 서비스와는 다른 신규 인공지능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당초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유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등의 규정에 따라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함.

- 그러나 대규모로 수집된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활용 특성상 서비스 가입시 일괄적으로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닌 ‘별도 동의’를 추가로 받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이지 않은 선택적 동의 사항이므로 데이터의 결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공지능기술 개발시 한계로 작용할 수 있음.

○ 다음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가명정보 특례¹¹⁾를 통해 과학적

9) 법원은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판시하여 ‘공개된 개인정보’의 경우 ‘동의’ 요건을 완화하고 있음(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10)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2024)”를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6호의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조항에 근거해 ‘공개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AI) 학습·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함.

11) 「개인정보 보호법」 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제28조의5(가명정보 처리시 금지의무 등), 제28조의7(적용범위) 등

연구 목적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처리¹²⁾하여 인공지능기술개발(목적 외 이용)에 활용할 수 있음.

- 그러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할 경우 인공지능기술 개발 자체가 어렵거나 성능이 미흡해지는 경우도 있음. 예를 들어, 자율주행 인공지능기술을 개발하려는 경우, 얼굴과 시선, 번호판 등의 정보를 가명처리하면 AI가 보행자 동작을 예측하거나 차량간 상호작용 패턴을 학습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 이와 같이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고려되어, 개별법¹³⁾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일정 기간 제외하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¹⁴⁾를 통해 인공지능기술 개발이 추진되고 있음.

1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3)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률>

분야	부처(전담기관)	법률 근거
ICT 융합	과기정통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산업융합	산업부	「산업융합촉진법」
혁신금융	금융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규제자유특구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스마트도시	국토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연구개발특구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모빌리티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순환경제	환경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14)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요 (<https://www.sandbox.go.kr/sandbox.Main>)

- 규제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로, 실증특례, 임시허가, 신속확인으로 구분됨.

- ① 실증특례: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하기 위한 허가 등의 근거 법령에 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거나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허가 등의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시장에서 실증 테스트를 허용. 이후 실증 결과에 따라 규제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정부는 관련 법령 정비
- ② 임시허가: 신기술로 인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로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요건 등

○ ‘실증특례’로 자율주행 AI 개발을 위한 영상정보 원본의 동의없는 활용,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서비스 개발을 위한 음성데이터의 동의없는 활용 등이 허용된 바 있음¹⁵⁾.

○ 그러나 실증특례는 최대 4년간 인정되는 한시적 방안으로, 관련 규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인공지능기술 개발이 중단될 위험이 있음.

□ 따라서 현재의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을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인공지능 기술 개발이 어렵고, 규제 샌드박스의 실증특례로 이에 대응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의 특례를 마련하는 법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 다만,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해 현행법에 따른 규제의 적용을 제외하는 특례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¹⁶⁾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특례의 구체적인 내용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또한, 특례를 도입하는 경우,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제도적·기술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 없거나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 때 우선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임시로 허가하고 관계 당국은 관련 규제 개선

③ 신속확인: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하려는 기업 등이 규제 유무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속확인을 신청하면 규제부처가 30일 이내에 규제의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 규제부처가 회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

15) 【참고자료】 개인정보 관련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주요사례

16) 참여연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건의서, 2025. 4. 24.

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등

1)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제3장에 제5절을 신설하여 인공지능 기술 개발시 적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의 특례를 마련하고 있음.

○ 인공지능기술개발을 위해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목적 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면서, 그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마련함(안 제28조의12제1항 및 제2항).

- 그 외에, 특례를 적용받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도 함께 규정하고 있음(안 제28조의12제3항 및 제4항).

○ 또한, 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기술개발 특례 적용 사항에 대해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례를 적용받았거나, 특례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개인정보 처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28조의13).

<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구 분		내 용
제3장 제5절		〈절 제목〉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 등
특례 내용 (안 §28의12①)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기술개발을 위해 동의없이 수집 목적 외 처리 가능
특례 적용 요건	(안 §28의12① 각호)	〈실체적 요건〉 ① 개인정보를 익명·가명처리로는 인공지능기술 개발 곤란 ②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가 된 공간 등 강화된 안전장치 마련 ③ 공공이익 또는 사회적 이익 증진 목적 포함+정보주체·제3자 이익의 부당한 침해 우려 현저히 낮을 것
	(안 §28의12②)	〈절차적 요건〉 요건 해당 여부에 대해 사전에 보호위 심의·의결 (필요시, 조건 부가 가능)
특례 적용시 의무	(안 §28의12③)	〈위험요인평가 실시 및 보호위 제출〉 〈해당 요건〉 ① 또는 ②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 ①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포함 개인정보 처리 ②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이익에 영향
	(안 §28의12④)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용 추가〉 - 개인정보 처리의 구체적 목적과 개인정보의 유형 - 위험요인평가 결과의 주요내용
특례 제한 (안 §28의13③·④)		〈내용〉 개인정보 처리의 일부 또는 전부 제한 〈사유〉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전부 제한) ② 특례 적용 요건 및 조건 미충족 ③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인공지능기술개발이 명백히 불가능 ④ 특별한 사유없이 6개월 이내 개인정보 처리 시작× ⑤ 위험요인평가 미실시 또는 평가 결과 미제출 〈절차〉 보호위 심의·의결
관리·감독 (안 §28의13①·②)		보호위가 주기적으로 심의·의결 사항의 이행 여부 관리·감독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처리자 및 관계자에 자료제출 요구)

□ 개정안은 인공지능에 관한 일반법인 「인공지능기본법」¹⁷⁾이 아닌 「개

17)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안전한 활용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등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인공지능 투명성 및 안전성 확보 의무, 고영향 인공지능의

「인정보 보호법」에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고 있음.

- 이는 개정 내용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는 특례를 규정하는 것이라는 점, 「인공지능 기본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이¹⁸⁾ 각각의 규정 사항에 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른 법률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서 「인공지능기본법」을 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의 특례를 규정하는 경우 법률의 우선 적용 관계가 명확하지 않게 되는 문제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은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여러 규정의 예외를 인정하는 별도의 특례를 신설하고 있음.

-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상 여러 규정의 예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 등의 규제를 마련하고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과 「인공지능기본법」 비교 >

	개인정보 보호법	인공지능 기본법
목 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주요 내용	개인정보 보호정책 추진체계 개인정보 처리 요건, 절차, 제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개인정보 관련 분쟁 조정 등	인공지능 정책 추진체계 인공지능 개발 및 산업 육성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성 확보

18)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인공지능,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산업 및 인공지능사회(이하 “인공지능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인공지능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외를 인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별 조문을 수정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는데, 이는 적용 예외의 범위를 명확하게 한정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특례가 포괄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가 제한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해 목적 외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더라도, 아동의 개인정보(제22조의2), 민감정보(제23조) 등은 이와 별도로 동의 등을 받아야 하므로,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제한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개정안과 같이 특례를 별도로 신설하는 것은 인공지능기술 개발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의 예외를 포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고, 이를 위해 별도의 절차나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데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임.

2.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

□ 개정안은 제3장에 제5절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 등”을 신설하고,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의 특례 적용 요건과 그 내용을 규정하며, 이를 적용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으로 보호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또한, 특례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로 인한 위험요인 평가의 실시 및 제출,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추가 등 인공지능기술 개발 특례를 적용받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안 제28조의1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제5절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 등 제28조의12(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기술 개발(성능 개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위하여 당초 수집한 목적 외로 처리할 수 있다. 1. 영상, 음성, 이미지, 부호 및 문자 등 처리되는 정보의 특성,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했을 때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서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이 어려운 경우 2.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가 된 공간에서 처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안전장치를 마련한 경우

현행	개정안
	3. 인공지능 기술 개발의 목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로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현저히 낮은 경우 가. 공공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인공지능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등 사회적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 위험요인 분석에 따른 안전조치 및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구체적 목적과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 2. 제3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의 주요 내용 ⑤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위원회가 부여하는 조건, 평가의 기준과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절 제목

- 개정안은 신설하는 제3장 제5절의 제목을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 등”으로 하고 있는데, 법제적인 측면에서 절의 제목은 해당 절의 주요 내용을 포괄하면서도 그 성격을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어야 하므로, 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등의 사례에 비추어 제5절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시 적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수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나. 특례의 내용 및 특례의 적용 요건

1) 인공지능기술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특례의 내용

- 개정안은 개인정보처리자가 특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장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하여 ‘당초 수집한 목적 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개정안은 대상을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의 처리로 제한하며, 개인정보 수집의 예외를 인정하지는 않음.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인공지능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개정안은 ‘수집 목적 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에 따

른 목적 외 처리에 대한 동의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개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특례의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 명확성을 제고 하기 위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이 장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수집한 목적 외로 처리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으나, 제3장의 규정¹⁹⁾ 중 어떤 조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을 명시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²⁰⁾.

○ 제3장의 규정 중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해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조항과 이에 부수하여 제외할 필요가 있는 조항을 특정하여 적용을 제외하여야 할 것임.

- 예를 들어, 제3장 중 목적 외 처리를 위해 동의 등을 요구하는 조

19)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의 주요 내용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제한,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내역의 통지, 개인정보의 파기, 동의를 받는 방법,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제2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운영 제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의 운영 제한,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가명정보의 처리 등, 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가명정보 처리시 금지의무 등, 적용범위

제4절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 상호주의, 준용 규정 등

20) 이와 관련하여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제3장제3절 제28조의7(적용범위)의 입법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음.

< 특례 적용범위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입법례 >

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제28조의7(적용범위)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처리된 가명정보는 제20조, 제20조의2, 제27조, 제34조제1항,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할(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19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제20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등)은 특례의 핵심 내용으로서 제외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특례의 취지를 고려하여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의 통지(제20조의2) 등 부수적 규정도 적용이 제외됨을 명시하여야 할 것임.

○ 그 외에, 성질상 특례의 성격과 무관한 규정(수집, 목적 내 제공, 동의 등)이나, 특례에 해당하더라도 여전히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규정은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특례의 범위에서 제외해야 할 것임.

- 예를 들어, 개인정보 처리 특례는 ‘적법하게 수집된 정보’의 ‘목적 외 처리’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이와 무관한 ‘수집(제15조 및 제16조)’, ‘목적 내 제공(제17조)’, ‘동의를 받는 방법(제22조)’ 등의 규정은 적용 제외의 범위에 포함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임.
- 또한, ‘개인정보의 파기(제21조)’, ‘영업양도’(제27조) 등은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특례가 인정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도 적용해야 하므로, 특례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2) 특례의 실제적 적용 요건

□ 개정안은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실제적 요건으로 ① 정보의 특성, 인공지능기술 개발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할 때 익명·가명처리²¹⁾로는 인공지능기술 개발이 곤란하고, ②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가 된 공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등 강화된 안전장치를 마련하며, ③ 인공지능기술 개발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 또는 사회적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현저히 낮은 경우에 해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특례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한 목적 외로 처리한 경우에는, 안 제28조의12에 따른 특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므로, 관련 규정(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등)을 위반한 것이 되어 이에 따른 처벌²²⁾을 받게 되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 다만,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서는’ 인공지능기술 개발이 어려운 경우 수집 목적 외 처리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에 대

21)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22)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71조제2호), 과징금(제64조의2) 등

해서는 현행법에 따라 수집 목적 외 처리가 가능한 상황을 고려하여 일부 수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상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① 익명처리²³⁾ 또는 ② 가명처리(제28조의2, 동의 불요) 하거나 ③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등에 따라 별도의 동의나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함.
- 개정안은 이와 같은 현행법에 따르지 못하는 경우에 목적 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① 익명처리와 ② 가명처리로는 인공지능기술 개발이 곤란할 뿐 아니라, “③ 제18조 등에 따른 별도의 동의나 법령상 근거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특례를 인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 특례의 절차적 적용 요건: 사전 심의

- 개정안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한 목적 외로 처리하려는 경우, 특례 요건 해당 여부에 대해 사전에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하고, 이 경우 보호위원회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12제2항).

23) 익명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음.

□ 사전 심의를 거쳐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 법적 불확실성 제거 등의 장점이 있으나, 인공지능기술 개발 촉진 측면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의 문제는 사고 발생 후 해결 과정이 복잡하고 회복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심의제도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규제를 통해 부작용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적 문제를 미리 회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활용한 인공지능기술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 공공의 신뢰를 확보하는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다만,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① 사전 승인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하여 인공지능기술 개발의 적시성이 떨어질 수 있고, ② 행정기관의 사전적 규제가 기술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체평가 방식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 즉,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정보주체에게 투명성을 제공할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하되, 보호위원회가 영향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특례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처리를 중단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우선허용·사후규제)을 제시함.

○ 그러나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가 사후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1대 국회에서 논의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²⁴⁾에 대해 인공지능에 대한 사전 검증 및 사후 통제를 강조하고 있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삭제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의견표명한 바 있음²⁵⁾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인공지능기술 개발이 지체될 우려와 관련하여, 종전의 심의·의결한 내용과 유사한 경우에는 심의·의결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 참고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²⁶⁾ 등

24) 21대 국회에서는 관련된 제정안 모두 임기만료 폐기되었음. 22대 국회에서 통과된 「인공지능기본법」은 기본적으로 과도한 사전규제보다는 자율적 책임과 사후 감독을 강조하는 구조임. 특히, 생명·신체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AI'에 대해서만 별도의 규제와 감독을 두고, 나머지 AI 서비스·제품에 대해서는 비교적 완화된 규제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25)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2023. 8.)

26)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기술·서비스에 대한 제한적 시험·기술적 검증을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1.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중간 생략)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종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37

실증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경우 신속한 특례 적용 등을 위해 절차 간소화 규정을 두고 있는 사례가 있음.

라. 위험요인 평가 및 제출

□ 개정안은 개인정보처리자가 특례를 적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①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거나 ②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 위험 요인 분석에 따른 안전조치 및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이하 ‘위험요인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개정안은 정보주체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험요인 등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인공지능기술 개발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려는 취지임.

○ 현행법²⁷⁾은 개인정보파일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

조제3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내용·방식·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신설 2024. 10. 22.>

1. 제5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결과 회신기간: 15일 이내로 단축
2.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상정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전문위원회에 상정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 (이하 생략)

27)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

해가 우려되는 경우,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해서는 영향평가를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개인정보처리자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특성, 그로 인한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영향평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임.

- 개정안에 따라 특례를 적용받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동의없이 목적외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일부 법 조항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점, 생체인식정보 등을 포함하는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 등은 유출될 경우 이를 회복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서 특례를 적용받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공공기관의 사례와 같이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안전조치 등을 도출하는 위험요인 평가를 의무화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실제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 제28조의13제3항제5호는 위험요인 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 처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인정보처리자가 위험요인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위험요인 평가를 완료하여 제출해야 하는 시점 등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

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간 생략)

⑪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있음.

- 따라서 위험요인 평가를 도입하려는 경우,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 과정에서 이를 판단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때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시기를 지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위험요인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요건 중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처리하는 것 자체가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문구가 위임의 내용을 한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방식의 위임의 필요한 것으로 보임.

마. 정보 공개

- 개정안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는 경우 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구체적 목적과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 ② 위험요인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의 주요 내용을 제30조²⁸⁾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공개하도록 함.

28)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개정안은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위험요인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유사 평가제도의 입법례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상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의무화되는 공공기관의 장은 영향평가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영향평가를 한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할 때에 영향평가 결과를 함께 첨부하도록 하며, 보호위원회가 해당 등록 현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²⁹⁾.

-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 3의2.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 3의3. 제23조제3항에 따른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 4의2.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7.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8.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과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29)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①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중간 생략)

④ 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을 누구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

- 이를 고려할 때, 위험요인 평가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방침에 포함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방식 외에 위험요인 평가 결과를 제출받는 보호위원회가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논의할 필요가 있음.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간 생략)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영향평가를 한 개인정보파일을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할 때에는 영향평가 결과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3. 관리·감독 등

□ 개정안은 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기술 개발 특례에 관해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해 주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와 관계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28조의13제1항 및 제2항).

○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심의·의결을 받거나, 보호위원회가 부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심의·의결을 거쳐 개인정보 처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알리도록 함(안 제3항).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8조의13(관리·감독 및 개인정보 처리의 제한) ① 보호위원회는 제28조의12제2항에 따라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와 관계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심의·의결을 거쳐 개인정보 처리의 일부

현행	개정안
	<u>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제한하여야 한다.</u> 1. <u>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경우</u> 2. <u>제28조의12제1항의 요건 및 제3항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부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u> 3. <u>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인공지능 기술 개발 등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u> 4. <u>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u> 5. <u>제28조의1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평가 후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u> ④ <u>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제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호위원회에 조치 결과를 알려야 한다.</u> ⑤ <u>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감독, 자료 제출 요구, 개인정보 처리 제한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가. 관리·감독 체계

- 개정안은 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기술 개발 특례를 인정한 사항에 대해 주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기술 개발 특례를 이용한 개인정보 침해나 그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주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보호위원회의 일반적인 업무로서의 성격이 있어 별도로 명시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다만, 현행법령에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전송 요구에 따르는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현황 및 활용내역 등을 체계적 관리·감독하도록 규정하고(법 제35조의4), 이를 위해 대통령령에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시행령 제42조의15)³⁰⁾한 사례도 있음.

30)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4(개인정보 전송 관리 및 지원) ① 보호위원회는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및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현황, 활용내역 및 관리실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15(개인정보 전송 요구에 대한 보호위원회의 관리·감독)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라 정보전송자 현황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보전송자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보호위원회는 본인전송요구 및 제3자전송요구에 대한 정보전송자의 이행 여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일반수신자의 시설·기술 기준 충족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정보전송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1. 정보전송자: 제42조의6제9항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내역에 관한 자료

2.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제1호의 자료

나. 개인정보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자료

다. 전송 요구 방법에 관한 자료(일반전문기관 및 특수전문기관에 한정한다)

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일반수신자: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제1호 및 제2호나목의 자료

나. 전송 요구 방법에 관한 자료

다.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둘째, 제63조³¹⁾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사업장 등을 검사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이와 달리 별도의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특히, 현행법 제63조제6항은 제출받은 서류 등을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기업협회는 기밀 유출 등을 우려하고 있음.

○ 셋째, 개정안은 개인정보처리자 외에 ‘관계자’에게도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31)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이 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3. 그 밖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정보처리자 및 해당 법 위반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보호위원회는 이 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기관

④ 제3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⑥ 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수집한 서류·자료 등을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⑦ 보호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받은 경우나 수집한 자료 등을 전자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기술적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제63조에 따른 일반적인 자료제출 요구와 달리, 이 경우에만 자료제출 대상자에 ‘관계자’를 포함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음.

나. 특례의 제한

- 개정안은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처리자³²⁾가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개인정보 처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정보 처리 제한 사유(안 제28조의13제3항 각호)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심의·의결을 받은 경우(전부 제한)2. <u>특례 적용 요건 및 부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u>3.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인공지능기술개발이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4. 특별한 사유없이 6개월 이내 개인정보 처리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5. 위험요인평가 미 실시 또는 평가 결과 미제출 |
|--|

- 개정안은 특례 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등에 대해 사실상 특례의 적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의 특례와 관련된 법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임.

- 다만, 개정안 제28조의13제3항제2호는 문언상 ‘특례 적용 요건’과 ‘보호위원회가 부가한 조건’을 모두 위반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취지상 두 사항 중 하나라도 위반하면 개인정보 처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음.

32) 개정안에 따르면, 특례 요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 외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처벌됨.

【참고자료】 개인정보 관련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주요사례

신청자 (승인일)	신청 서비스명 및 주요내용	결과 및 주요내용
현대 자동차 (2025. 1. 7.)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한 원본 영상 활용 개발 방안> 안전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이동형 영상 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한 원본영상을 자율주행차용 AI 학습에 한하여 이용	[조건부 수용] 자율주행 기능 연구개발 목적으로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하는 경우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시 필수 안전 조치 기준'* 준수 조건으로 수용 * ①개인정보 보호 원칙 준수, ②영상데이터 보호대책 마련·이행 ③망분리, 접근제한 통제 등 영상데이터의 보호 및 관리, ④업무위탁 절차 준수 등 외주인력 보안대책, ⑤주기적 점검 및 교육 실시, ⑥정보통신융합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등
카카오 모빌리티 (2024. 3. 7.)	<영상정보 원본 데이터 활용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 자율주행 기능 연구 개발 목적을 위해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허용	
우아한 형제들 (2024. 12. 18.)	<영상정보 원본 활용 자율주행 배달로봇 시스템 고도화> 자율주행 배달로봇에 부착된 레이더, 라이 다 등의 센서로 얻은 정보와, 카메라로 취득되는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해 자율 주행 시스템을 고도화 돌발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자율주행기 술 개발	
포티투닷주 식회사 (2024. 4. 26.)	<영상정보 원본 데이터 활용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 자율주행 기능 연구 개발 목적을 위해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허용	
(주)케이티 (2024. 10. 17.)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전화 수신 시, 단말에서 동작하는 AI기 술로 실시간 통화 음성데이터로부터 성 문정보를 추출하여 목소리간의 유사도를 측정, 신고된 범인의 목소리와 유사한 경우에 고객에게 위험을 알림	[조건부 수용] ①민감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위험 방지(구체적 보관기간 설정, 전수조사 및 삭제 기준 마련, 주기적 모니터링 등), ②투명성 조치(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성문 추출·이용시 정보주체 통 지 등), ③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방안 마련 및 권익침해 위험 최소화(이의제기 절차 마련, 신규 범죄 발생시 대응절차 마련 등), ④주기적 이행점검(지속적 모 니터링, 사전 테스트, 반기별 보완계획 마련 등)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수용

신청자 (승인일)	신청 서비스명 및 주요내용	결과 및 주요내용
서울 대학교 병원 (2024. 6. 28.)	<서울대학교병원 국가전략기술 특화 연구소 데이터 플랫폼> 서울대학교병원이 국가전략기술 첨단 바이오-데이터 분석·활용 분야 특화연구소에 1호로 지정됨에 따라 해외 연구자도 국내 보건의료데이터를 조회, 분석, 활용 등이 가능한 국제 공동연구를 위한 데이터 플랫폼	[조건부 수용] 첨단바이오 분야 국제 공동연구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안전조치 기준*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수용 * 데이터심의위원회(DRB)의 심의, 보호법상 가명정보 안전조치 의무 준수, 국외 이용자 사전 특정 및 관리, 데이터 플랫폼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대책 마련, 자료제출 및 이행점검 협조 등
가톨릭 중앙 의료원 (2024. 12. 18.)	<마이데이터기반 맞춤형 만성질환 발생 예측 서비스> 의료 마이데이터 기반의 만성질환 맞춤형 예방·관리 및 중증질환 이환 예측 서비스 제공	[조건부 수용] 신청기관이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므로 법 제35조의3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위를 갖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되,
룰루메딕 (2024. 12. 18.)	<의료 마이데이터의 국외전송을 통한 해외 의료지원서비스 실증> 의료 마이데이터 국외전송을 통한 해외 의료지원서비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시 제도 시행일 1년 이내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함
카카오 헬스케어 (2024. 12. 18.)	<내가 먹는 약 안전하게(My MEDS, Mydata Medication Education & Drug Safety) 서비스> 의료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대국민 서비스(개인의 약물관리·안전활용 지원) 및 의료진 서비스(진료 연속성 개선 지원)	※ 2025. 3. 13.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시행

문 의 처

02)6788-5104